

서 면 답 변 서

윤호산 의원

□ 질 문

- 전문장례식장 설치기준 입지조건인 보건, 위생, 안전, 교통 및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에도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이유?
- 토지이용목적이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토지거래 허가가 나간 이유?
- 건축허가 신청시 실무종합심의 및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내용에도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지역주민 공청회)과 도로가 2차선인 관계로 교통혼잡 발생(교통영향평가)이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역주민과 면담시 건축주가 장례식장을 국가적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득하였는데 부친장례예식장대표의 각서에 의해 민원발생 및 교통혼잡의 책임을 들어 장례식장을 포기하든지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건축주가 주공입대(아) 주민과 합의한 내용(24인승 버스 1대 기증)이 납득이 안 가며, 신진주민, 이웃주민 및 인근 공장 주민과의 합의서도 필요하다고 보며 이 합의서를 건축위원회 심의에 제출한 것은 부당.
- 행정심판에서는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재결되었으나, 건축관련 공무원이 재판에 대한 경험도 없이 소송을 수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용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이라는 반증을 못 함으로써 폐소한 것에 대한 의견은?
- 이행각서 내용 중 건축주가 부친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없이 당사자간(주민대표와 장례식장대표)이행각서를 쓴 것은 잘못된 것이며, 지역주민은 각서 내용도 모르고 있어 주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 답 변

- 전문장례식장 설치기준 입지조건은 보건, 위생, 안전, 교통 및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한 것은 “96.장례식장 설치자금 융자지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97. 98. 지침에는 삭제된 것이며 동지침의 사업추진 방향에는 1차적으로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한다고 규정되었고 건축허가시 교통영향평가 및 공청회는 법적절차는 아니지만 민원해소를 위해
 - 96. 7. 5 :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하였고
(건축허가 전 행정공개로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방지, 주차장 설치계획보다 더 확보토록 권장)
 - 96. 7. 10 : 건축허가 예고문을 현장에 게시하였음.

건축허가 처리경위를 말씀드리자면,

- 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한 결과 주민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아니므로 주변민원 및 환경, 소음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청장이 적의 처리토록 조건부 가결되어, 동 사항을 보완하여 건축허가 재신청 할 것으로 반려하였음.
 - 이에 건축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과 도시미관, 주변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려 처분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고 기각됨으로써
 - 건축주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인근의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환경소음 및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는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음.
 - 위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고자 하였으나 소송지휘한 서울고등검찰청이 패소원인을 검토한 바 상고포기로 결정하여 소송 종결되어 건축허가 처리케된 것임.
-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은 제21조의4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서를 1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당해 허가구역의 토지이용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는 허가해 주어야 하므로 처리한 사항이며, 토지거래 허가 후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이행은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의 관계부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임.
- 허가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건축허가요건이 아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예고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소음 및 교통혼잡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시 차폐식수 및 여유주차 확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였음.
- 건축주가 지역주민과의 면담에서 국가적시책 사업으로 판단하여 개인적으로 언급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관청에서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며 장례식장 건축은 건축주 개인사업으로 장례식장 건축포기 및 이전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음.
- 이웃주민의 합의서에 관하여는 민원해소를 위해 신진주민 등 인근주민들과의 합의는 필요하나 우선 주공입대(아) 주민들의 합의를 제출한 것으로 춘의주공(아) 주민과 건축주와의 합의를 건축위원회 심의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진정서(합의서)에 대한 회신으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음.
- 소송수행 미흡에 대해 장례식장 담당공무원은 토지거래허가 및 건축허가 신청부터 건축허가 반려까지 민원과 법적사항을 장례식장에 관한한 그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건축허가 반려가 타당하다는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서와 주변 현황도, 진정서 사본 등 인·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서울고등검찰청의 법무관과 소송수행에 대해 협의 및 지휘를 받아 최선을 다해 소송을 수행하였음.

- 이행각서는 건축주와 주민대표간에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행각서 작성시 주민의 대표는 주민의 위임을 받아 주민대표로서 건축주와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서 중 부천시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환조건에 맞는 대지가 없다는 것을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이 관련부서를 방문 확인한 바 있음.
-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역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 질 문

- 항공기 소음공해로 작동 이주단지로 이주하는 오쇠리 주민들의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

□ 답 변

- 먼저 작동이주단지현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4개 단지 350동(단독주택 346, 교회 1, 경로당 1, 공동시설 2)이며, 98. 9. 14 현재 건축허가 건수는 89동(25%)입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도시계획법상 주택의 관리는 구역지정 목적상 구역지정 당시의 건축물동수 증가 없이 관리하는 것으로써 주택이축시에도 기존 건축물을 반드시 멸실하여야만 새로운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 오쇠리 주민들의 기존 가옥은 국가(건설교통부 : 서울지방항공청) 소유로서 사업 시행청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멸실의무가 있으나 세입자 보상 및 미퇴거로 즉시 멸실이 곤란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우리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시 고문변호사와 건설교통부의 질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검토했으나 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으로 기존 가옥을 멸실해야만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임과 기존 가옥 철거의무가 항공청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계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금번 감사원 감사시 제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시 관계부서 및 사업시행청인 항공청과 협의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서면답변서

박노설 의원

□ 질 문

- 설치허가시 프로판 20톤, 부탄 20톤이었는데 사고 당시에는 프로판 30톤, 부탄 40톤으로 증설되었는데 언제 증설되었으며 적법하게 되었는가?
- 복합충전시설은 부지가 3,500㎡ 이상 되어야 하는데 대성에너지 충전소는 수백평에 불과한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허가가 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 변

- 대성에너지의 최초허가는 76. 11. 9 경기도에서 허가되었으며 90. 10. 29 경기도조례 제2064호에 의거 우리 시에 위임되어 96. 8. 24 지상의 프로판 20톤 저장탱크설비를 지하 프로판 20톤, 부탄 20톤 저장탱크설비로 변경허가되었고 97. 4. 28 프로판 30톤, 부탄 39.9톤의 저장탱크 용량증설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3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되었음.
- 복합충전시설은 부지가 3,500㎡ 이상 되어야 하나 내동 70번지 대성에너지의 용기충전시설은 기이허가된 사항으로 현행고시에 저축을 받지 않았으며, 내동 70-2번지(1,233㎡)의 자동차충전시설은 현행고시상 필요로하는 부지 1,000㎡ 이상이었으며 액법 제8조 별표3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변경허가된 것임.

□ 질 문

- 이재민이 2가구 발생하여 교회에서 임시 거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 답 변

- 대성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현재 이재민은 3가구 7명으로(1가구 추가접수) 소망교회에 기거하고 있는 김남욱 씨 가족(3명)은 보증금 200만원, 월세 63만원에 건물을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며 천산중앙교회 교육관에 기거하고 있는 조동춘 씨 가족(3명)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3만원에 건물을 임대하여 태광슈퍼를 운영하다 사고를 당하였고, 최중익 씨는 옥상에 임시기거하다 전소되는 바람에 후배 집에서 기거하고 있음.
- 이재민들에 대해서는 9. 16 오정구청장이 방문하여 긴급생계비 및 위로금으로 각 10만원 및 신흥동 자생단체(통친회, 방위협의회)에서 또한 각 10만원씩을 전달한 바 있으며 생활용품으로는 적십자 구호물품을 지급하였고 생계구호비는 시에서도 지급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음
- 또한 조동춘 씨 가족(부인 : 윤명숙)의 취업요구에 대하여 대하여 알프스캐더링(도시락제조업체)에 취업토록 한 바 있으며, 생활실태조사결과 생활이 어려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로 책정하여 관리할 예정임
- 앞으로도 이재민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음

□ 질 문

○ 가스폭발사고 관련 피해중소기업에 대해 부천시 지원방안은?

또한 경기도 및 중앙부처차원에서 적극 지원 및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부천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 답 변

○ 보성금형, 삼우전자, 대원냉동 등 피해가 큰 공장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공업진흥과 계장급으로 배치, 피해업체로부터 애로청취 및 복구에 이르기까지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조업을 하지 못하는 6개 업체에 복구기간까지 조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지 임시사용부지 1,000여㎡를 물색중에 있음

○ 원인규명이 진행되고 있으며 사고책임이 사주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 사고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피해업체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피해업체에 대하여 조기에 지원되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인 중소기업청 및 경기도에 시설복구비 지원차원인 특별지원대책을 98. 9. 18 건의하였으며 정부차원 보상추진을 위하여 도 16개 부서, 행정자치부 14개 부서, 산업자원부 6개 부서 등 36개 부서에 특별재난 지역선포, 보상지원 및 은행융자, 조세유예·감면조치, 재난관리기금, 국고지원확대 및 시민성금모금 허가요망 등 지휘보고서를 98. 9. 21 제출하여 추진중임.

□ 질 문

○ 신흥동 지역의 심각한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쾌적한 환경도시 부천 건설을 약속한 시장의 신흥동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종합적인 환경조사와 각종 오염원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또한 각종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 답 변

○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에 우리 시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97. 9. 10 납품 받았으며,

○ 앞으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부천시민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검토 후 「부천환경의제 21」과 함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 신흥동 지역이 우리 시의 타지역에 비하여 대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 우리 시에 3개소밖에 없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가 신흥동 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대기오염도를 측정 감시하고 있으며, 92년도부터의 측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각종 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위해 명예환경통신원, 하천감시를 위한 민간자율 하천감시원 등을 활용한 민·관합동 감시는 물론, 98. 8월 개통한 「128환경신문고」 전용전화 등을 이용 환경 오염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토록 하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부천시 대기오염도 현황

구 분 연도별	측 정 항 목				비 고
	아황산가스 (PPM)	먼 지 ($\mu\text{g}/\text{m}^3$)	오 존 (PPM)	이산화질소 (PPM)	
환경기준	0.03	150	0.06	0.05	
98.	0.014	80	0.008	0.026	98. 7월 현재
97.	0.011	53	0.010	0.031	
96.	0.012	102	0.012	0.035	
95.	0.027	74	0.014	0.036	
94.	0.023	80	0.014	0.022	
93.	0.027	96	0.015	0.040	
92.	0.037	111	0.015	0.032	

※ 자료 : 환경부 대기정책과

대성에너지가스폭발사고및LNG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행정사무조사요구안

의안번호	제43호
의결년월일	98. 9. 18 (제64회)

발의년월일 : 1998. 9. 18

발 의 자 : 강진석 의원 외 20인

1. 주 문

- 대성에너지 가스폭발사고의 시민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의 수립과 지원 여부를 조사 분석하고 LNG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2의 가스폭발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함.

2. 제안이유

- 지난 9월 11일 발생하여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대성에너지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적절한 수습대책 여부와 불특정 다수 시민의 피해에 대한 원만한 보상대책을 수립 지원하였는가를 조사 하고
-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하여 거의 모든 부천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LNG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자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여부, 설치기준의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 선토록 함으로써 또다른 제2의 가스폭발사고가 없도록 사전 예방하여 시민생활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4. 기타 관련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 9명(위원회별 3명)
- 활동기간 : 98. 9. ~ 10. 31